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94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최형두·김선민·정동영

박충권 • 서일준 • 김상훈

김종양・김소희・인요한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누리호와 같은 우주발사체에는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 강제종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화약류가 필요한데, 특성상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우주발사체 전용품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상황임.이러한 이유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될수밖에 없으나, 민수화약류로 분류되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의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화약류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 분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우주발사체용 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국내 제조 우주발사체(제2조제3호의2 및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우주발사체를 말한다)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제조에 대하여는「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8조의8(우주발사체용 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국내 제조 우주발사체(제2조제3호의2 및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우주발사체를 말한다)의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제조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